'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 사회단체 대책모임

❀ 서울지역 참가단체
인권운동사랑방, 양심수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참된 의료를 위한 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한국기독청년단체협의회

❀ 부산/울산 지역
부산대책위 (부산연합외 27개 단체),
울산시민대책위 (울산연합외 22개 단체와 개인),
울산동구주민대책위 (현대중공업 울산노조외 19개 단체와 개인)

❀ 전국대책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노총, 국민승리21,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연락처
전국대책위 : 전국연합
(136-034)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8-2 백호빌딩4층 ☎ 02-921-4090
부산/울산지역 : 울산시민대책위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190-6 3층 ☎ 052-281-5005
'영남위원회' 구속자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모임 :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110-240)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3층 ☎ 02-723-4255

후원성금을 모아주십시오!
은행구좌 : 상업은행 113-08-011248 예금주 : 장 미

우리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엿듣고 있다
누군가가 나의 휴일 오후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만의 약속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

CPJ. C. 8

불법도청 '합법' 감청

멀고도 가까운 그 사이와 차이에
우리들의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다.

통제 사회 21세기?
도청 · 감청을 거부한다!!

'영남위원회' 구속자인권을 위한 시민 사회단체 대책모임

인권 자료실
등 | B4 | 63

글차례

1. 발간하며
2. 도청의 피해에 대한 각 계의 입장
법조계 ---------- 백승헌 (변호사)
학 계 ---------- 박상환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민교협 사무처장)
보건의료계 ---------- 유수일 (참된 의료를 위한 청년한의사회)
종교계 ---------- 권진관 (목사 성공회대 신학과)
3. 기획소론
도청 감청에 대한 외국의 입법과 국제 인권법 그리고 제언
----------조시현 (성신여대 법학과)
4. 자료로 살펴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4년 이후
5. 해외원고 I [미국의 범죄단속 및 거리안전 종합법]
해외원고 II [도청을 중단하라!] Bug off! ----- David Banisar
6. 연대서안 ---------- 국제사면위원회, 독일노총, OMCT
7.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 성명서
8. 도청 감청남용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9. 서명인 명단

발간 하며

지난 7·80년대 수많은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삶과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지난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덕에 우리는 21세기를 앞둔 오늘 권위적 사회의 어둠을 거의 잊고 살아왔다.

우리들의 망각을 깨우치기라고 하듯 가끔씩 불거져 나오는 이러저러한 사건들은 무디어진 감각에도 새롭게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93년 제정이래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읽혀지던 도청, 감청남용에 대한 보도기사들은 새삼 되돌아보면, 사소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에 대한 도전이었음에도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에서 우리는 지나쳐 왔다.

통신 비밀 보호법은 그 명칭에서 보면 나의 권리가 보호받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그 운용은 정반대로 개인의 사생활을 정부나 수사당국이 감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법제화 한 것이다.

선진국, 제3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심각한 조직 범죄나 국가 안보에 대해 도청이 행해지지 않는 나라는 없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통신 비밀법 제정 이전에도 도청이 행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하물며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국가안보라는 커다란 명분은 7·80년대 우리사회 전체에 드리워졌던 커다란 암운이었으니 그 이름 아래서 유보되었던 국민의 권리, 개인의 자유, 인간의 기본권들은 일일이 거론 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진전된 통신기술이 지구 저편의 친지를 근거리로 데려올 수 있는 양지가 있는가 하면, 표적인물이 된 개인의 삶이 감시기구의 렌즈와 마이크아래 철저히 노출되어 사생활이 파괴되는 음지가 있는 것이다.

미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1세계 선진국들에서는 각 국가별로 정도를 달리하며 순수하고 무고한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 도감청의 폐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일단은 도청의 대상이나 기간의 제한 등에서 비교해 보아도 OECD가입으로 그들의 반열에 섰다고 자부하는 우리 나라는 인권보호, 사생활보호의 측면에서는 한참 뒤지고 있다.

이번에 도청감청 남용을 저지하기 위한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 단체 모임의 서명운동과 홍보활동은 그 첫 발을 딛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해마다 증가되는 '합법적' 감청의 수치와 기각되는 영장의 횟수,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도 감청으로 구속한 범죄조직 하나도 없었다라는 보도는 그러한 우려를 현실화 시켜준다.

일반 시민들이 흔히 생각하기 쉬운 '특별한 사람-정치가나 범죄자-들만이 감천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법조항 자체에서도 그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 일반 형사범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어 수사 편의주의를 극도로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침해에 대해 시민들은 더 이상 무감하게 지나기보다는 천부적으로 주어진 기본 권리들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2세계 몰락 이후 유럽, 미국, 일본 등의 1세계국가들은 공세적으로 도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있음을 시민·사회단체는 예의 주시해야 한다.

심각한 조직범죄나 국가 안보라는 이름 하에 이러한 경향은 용인되고 있지만, 사실을 들여다보면 정작 각국에서 행해졌던 도청, 감시 비디오 녹화의 대상중 80%가까이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한 개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청법의 확장, 개정안들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전자 통신에 의한 개인·사회의 감시 기능을 국가, 정부가 독점하게 됨으로써 빚어지는 비인간적, 초헌법적 또 다른 범죄에 대해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를 막기위해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

1) 불법도청으로 사생활이 낱낱이 감시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법원의 감청영장 제한, 기간 명시가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2) 불법도청으로 취득된 자료는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재판의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도록 장치가 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취득원에 대한 법원의 심사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3) 94.7.27부터 시행중인 우리 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도 '허가'된 감청이라 할 지라도 기본권(인권헌장)에 비추어, 그리고 우리 나라의 헌법에 비추어 범죄사실외의 내용들을 일체 채택하지 않아야 될 뿐 아니라 소멸시켜야 한다.
4) 법원의 감청영장 발부에 한 사람의 법관이나 검사의 판단이 아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실질적인 발부남용을 막는다.
5) 도청장치의 시중 판매를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 허가제를 둔다.
6) 통신비밀보호법, 기타 관련 법에 감청의 목적과 대상을 엄격히 규제한다.
7) 사적인 도청업자, 기재판매·구매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8) 일선 경찰들에게 위의 취지를 교육하여 남용을 막는다.

편집자의 말

이 작은 책자에는 발간사에서 의도했던 우리들의 경각심을 깨우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에 동의하는 각 계의 시론들을 받아 실었다.
기획된 논문에는 '미국 등 선진국의 도청에 관한 입법례'들과 국제인권법에 명시된 인권 보호와 이의 침해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례를 다루며 국내 통신비밀법에 대한 개선과 시민·사회단체의 행동에 대한 제언을 다루었다. 그 다음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시행령에서 대표적 조항을 살펴보고 그 허구를 신문기사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해외원고는 마땅히 따라야 할 모범사례는 아니지만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우리보다 조금 나은 조치를 행하고 있는 미국의 도청법을 해외 입법례로 소개해 보았고, 일찍 이부터 도청의 문제를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대항해 싸워온 영국의 민간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의 경고성 원고를 실어 보았다.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 모임>은 이 책자의 발간과 더불어 도청·감청의 남용을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 운동의 범위를 넓히려 노력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무고한 어떤 개인도 심지어는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무차별하게 사생활을 노출시킬 수 없다는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계속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 나라 도청의 법제와 실제

변호사 백승헌

1. 도청의 의미

우리 나라에서 도청의 문제는 단순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측면에서만 이해될 수는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 군사 독재 기간뿐 아니라 문민정부라는 과거 정권아래 에서도 정치적 반대자를 감시하는 데 도청이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왔고 전화로 통신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정보기관에서 이를 엿듣고 이용하여 구금 등 불이익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도청의 문제는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도청은 전기를 이용한 원거리 통신 방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통신을 통신 주체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듣거나 이를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인류가 원거리 통신 방법을 개발한 이래 도청은 항상 문제가 되어 왔고, 일찍이 영미법에서는 이를 개인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식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헌법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 17조)를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헌법 제 18조)를 명문화하고 있다.
한편 수사 기관의 처지에서 보면 조직화되는 범죄를 막아내는데 있어 도청의 유용성은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도청의 허용을 요구하여 왔다.

2. 도청에 관한 법제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은 도청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 증거 수집 방법의 하나로서 도청의 인정 여부와 요건은 해석론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나 도청은 수사 대상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소위 강제수사 방법이 하나이고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형사소송법 제 199조)이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도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수사 방법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법률이나 판례에 따라 압수의 논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상당수 있었다.
이러한 입법 부재 상태에서 불법 도청이 문제는 항상 시빗거리가 되었고 도청은 음습하게 광범위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문민정부라는 것이 초원복국집 도청 사건을 통하여 성립된 정권이라는 측면에서 아니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1993.12. 이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법률은 도청을 감청이라고 표현하면서 수사 기관에서도 감청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감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효율적인 수사를 하기 힘든 범죄에 한하여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중에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포함시켰다. 또한 그 전제조건으로 중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3. 도청의 운용

영장에 의한 도청은 매우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될 것을 전제로 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하였고, 내국인이 경우에도 다른 영장과는 달리 지방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담당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 이러한 제한 취지는 거의 지켜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감청을 허용한 영장이 연간 수 천 건에 이르고 있고 그 수효도 줄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가한 예가 많았고 법원이 이를 제한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매년 밝혀지는 불법감청도 수 십 건에 달하고 있고 출소 장기수 집이나 노동연구소 등에서 도청 기가 발견되기도 하는 등 불법적인 도청이 아직도 행해지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반증이 드러난 것이다.

4. 속칭 영남위원회 사건에서의 도청 문제

속칭 영남위원회 사건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반국가단체 소속원들 사이의 회합, 통신사실이 거시되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개인간의 전화 내용을 전제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도청을 통하여 수집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모두 영장을 발급 받아 이루어진 것인지는 매우 의심스러운 형편이다.
또 영장에 의하여 도청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그 문제는 심각하다. 즉 공소장에 따르면 도청 기간이 여러 달에 걸쳐 있는데 이는 당사자의 전화를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도청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하였듯이 도청은 최대한 제한되어야 하는 수사 방법인

데 이번 사건에서처럼 장기간에 걸쳐 포괄적인 도청을 하였다는 것은 통신 비밀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도청 자료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되는 상황이 우리의 인권 현실인 것이다.

'제2의 건국'과 인권 보호
- 급증하는 개인 통신의 비밀 침해를 우려하며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교수 박상환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우리 사회에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와 공유해서는 안될 정보 사이의 구별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그리고 민간과 군부의 독재 정권으로 점철되었던 과거와는 구별되는 현 김대중정권은 우리의 기대만큼 개인 통신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가?

앞의 두 가지 의문은 하나의 토대에서 상호 관련이 있다. 즉 시민 사회적 요구와 강제의 수준에 따라 그 사회의 지배권력 다시 말해 정권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평범한 진리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분단국가라는 조건에서 빠른 경제적 발전을 바라는 우리의 특수 상황에서 강력한 사회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역할을 인식할 때, 민주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효하게 촉발시킬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경제발전과 사회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김대중 정부의 '제2의 건국 운동'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 건전한 자본주의의 정착에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기'와 다른 '타인'이 공존할 때 기능 하는 '근대(modern)사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더불어 사는/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다원적 사회가 민주사회이다. 다원적 사회는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가 동등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지배적 권력에 대해 약자인 개인의 요

구를 '관용'(toleration)하는 사회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개인의 인권은 정권 유지의 목적보다 하위에 놓일 수 없음은 자명하다.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었던 지난 시절을 이제 우리는 철저히 비판하여야 한다. 김대중대통령 자신이 그와 같은 독재적 정권의 피해자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의 몇 가지 공안 사건을 접하면서 놀라움과 배신감을 느낀다. 권력의 유지라는 목적을 위해서 왕년의 적들이 사용한 수단, 방식과 논리를 그대로 빌어 온다는 판단을 하도록 한다.

지난 7월의 소위 '영남 위원회'사건이 하나의 예이다. 경찰 보안 수사대가 발표한 내용에서 우리는 지난 시절 우리의 귀에 너무나 익숙한 용공조작 사건을 연상하고, 연행 구금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과연 지금 이 정권이 국민의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김영삼정권을 결정적으로 파국에 이끈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에 대한 그들의 반대 투쟁과 북한동포돕기 운동 등이 수사 발표 상 혐의 내용의 일부임을 보면 우리는 다만 아연실색할 뿐이다. 문제를 개인 통신의 비밀 보호를 규정한 헌법 18조와 연결 지어 말하자면, 그들은 96년 5월부터 통신의 감청 내지 도청을 당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국가 정보, 수사 기관의 비공식 통신감청활동 금지에 대해 김대중대통령의 확고한 의사표시가 당선직후 커다란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한다. 소위 '영남위원회'사건의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우리는 주시한다.

93년 말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96년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해마다 통신감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다. 현실적으로 법적 감청과 불법적 도청의 구별은 단지 법적 제한 시간인 48시간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통신의 감청 및 검열의 허용조건을 더욱 엄격히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본질적 문제는 수사관행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무의

식과 무의지에 있다.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인권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에 있다. 수사의 목적상 불법적으로 도청(또는 고문)하는 사람이 이 사회와 유리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점에서 불행하지만 그들의 불법적 관행은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와 일정정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결론 맺을 수 있다. 왜곡된 일상생활에서 우리 모두 불법적 관행에 익숙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지하철노조원의 '준법 투쟁'은 유효한 투쟁수단일 수 있다. 정상적인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은 존재하여야 당연한데, 한국통신의 노동운동을 '체제전복'과 결부시켰던 김영삼정권의 시절을 기억한다. 광주의 학살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한데, 그러한 폭력이 거꾸로 무공훈장을 받고 그들과의 공동생활에서 이해관계를 다투던 시절 우리는 폭력에 너무 근접해 있지 않았는가? 한 개인이, 한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 덜어줄 수 없을 때, 아들의 손을 자르는 비정의 아버지는 속출할 수밖에 없다. 복지사회는 인권보호와 직결된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다.

복지사회의 구현은 신용사회의 다른 표현이다. 신용사회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로부터 비롯된다. 우리는 개인의 신상정보유출에 대해 대단히 너그럽다. 학생들의 졸업 후, 입사 후 등등 한 단계 매듭지을 때마다 집으로 날라오는 기업체 편지, 복덕방의 전화는 몇 푼의 돈에 눈이 멀어 개인정보를 건네준 직업의식 부재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무의식과의 변주곡이다. '인권'은 생소한 관념으로 우리들은 일상생활을 살아간다. TV에서 묘사되는 '몰래 카메라'는 사실을 다소 단순화시킨 그러나 넌픽션이다. 생활정보지에 실린 무수한 심부름센터의 광고를 보면 우리의 배타적 삶의 현주소를 보는 듯 한다. 도청기를 가전제품처럼 사고 파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운상가 100여개의 업소에서 년간 15,000여대가 일반인에게 판매되고 있다고 추정한다. 도청기와 더불어

도청방지기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신용사회의 근간인 개인의 신뢰가 의심되는 지금, 김대중정부는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을 획책하고 있다. 다행히 재정적 이유로 유보된 상황이나, 선거 전후의 입장이 뒤바뀌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카드 한 장에 개인의 많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한할까? 행정적(주민지배적) 효율성이라는 수단을 위하여 진정한 민주사회의 핵심인 개인의 사적 생활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인가?
'제2의 건국'은 정권유지라는 보수적 차원에서 성공할 수 없다. 복지사회, 신용사회, 다원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당연히 다른 타인의 존재를 전제할 때 비로서 가능하다. 우리의 질곡인 사상표현의 자유의 유보를 철폐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될 것이다. 이것은 인간됨의 기본인 인권보호이고, 인권보호는 개인의 사생활보호로부터 시작된다.

보건의료계의 입장

지난 7월 부산과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민선 구청장을 비롯한 청년노동운동가와 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의 구속으로 알려진 '영남위원회' 사건의 전개관정은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한다.
먼저 우리는 당 사건 구속자들의 행동에 대한 유, 무죄를 논할 위치에 있지 못하며, 이는 재판과정을 통해 명백히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의 심각한 인권유린과 재소자중 중증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질병치료에 조차 가해지는 가혹한 규제행위들이다.

1. 알려진 바와 같이 박경순씨는 중증의 간경화 증세로 6개월 시한부의 삶을 선고받은 상태로 구속 이전부터 한방치료에 희망을 걸고 치료받던 중이었고 앞으로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우리 <참된 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는 뒤늦게나마 박경순씨에 대한 한방치료가 허용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번 부산구치소 당국의 허용조치는 그간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전향적인 것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함께 구속된 이은미, 홍정연씨도 추간판탈출증으로 고통받고있는데 이들에게는 물리치료만이 허가된 것은 유감이다. 빠른 시기에 이들에게도 적극적이고 적절한 치료가 허가되기를 바란다.
의료인으로서 우리는 피의자들의 구속수감과 동시에 이들의 보호책임을 맡은 교정당국은 전문가의 양심에 따른 진단과 치료를 보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료인의 진료에 추호의 제약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요구한다.
아울러 전국의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모든 재소자들에게도 인도적인 차원과 건강권의 측면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현 정권이 국민의 정부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2. 또한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사실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무려 3년에 걸친 동안 불법적 도청이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6개월로 제한된 감청에 대한 법률적 측면에서나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어렵게 발전해온 민주개혁의 측면으로나 시대착오라고 판단된다. 그러한 위법적 행위에 의해 취득된 사실들은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라 믿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공소사실은 그 정당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국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불법도청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규정을 위배하는 명백한 위헌이며 인권탄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 정권에게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이 행했던 인권탄압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러한 추세를 예의 주시할 것임을 알립니다.

1998년 10월 8일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참된 의료실현을 위한 청년 한의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에는 인권침해와 고문조작이 없다

권진관 (성공회대학교 신학과 교수)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는 생명이 존중되고 인간적인 사회를 말한다. 그러나 요즘 보면 비인간적이고 인권 침해적이며 잔인하기까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것들이 공직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약간의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열할 정도로 국민들을 억압, 착취하는 모습이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감정과 심증에 의해서 사람들의 사건혐의를 판단하지, 합리적인 근거로 판단하거나 수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들이 특히 과거의 군사 독재 문화의 유산이 온존되고 있는 수사기관들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보장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많은 식자층들이 이것도 한갓 형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위원회는 다름 아니라 현재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관장하고 지도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검찰 및 경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을 남용하는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고문에 의한 조작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민적인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상부구조가 주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인권보장은 이미 물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적어도 제3의 세력, 시민사회의 인권 그룹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가 아니고서는 무의미하다고 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이번 815 사면

에 의해 석방된 양심수는 전체 455명중에 94명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현정부가 출범한 이후 약 7개월 동안에 198명의 양심수가 구속되고 이중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자가 128명에 이른다고 한다.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한다. 불법적인 고문과 도청에 의해서 짜맞추기식으로 사건을 만들어서 사람을 엮어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필자의 견해에서 보면 이번 여름에 일어난 소위 '동창회'사건 (소위 한민전 영남위원회사건)도 이러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우리 사회는 생명이 보호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석에서는 이러한 가치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인 안기부, 검찰, 경찰 등과 같은 수사기관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들 기관들이 국민들에게 위압적이며, 소외된 계층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마치 적으로 취급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판결을 잘못 내려 범인이 아닌 사람을 사형 당하게 한 어떤 판사가 즉시로 법복을 벗고 어떤 외딴 성당에 가서 청소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감동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권을 억압하기를 식은 죽 먹기로 해대는 사람들이 건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구조조정과 합리화를 부르짖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영역에서도 합리화하고 구조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피의자들을 심문하고, 구속해야 하며, 또한 가택이나 사무실을 수색하고 압수할 때에는 법집행절차에 따라 틀림없이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 해야 한다. 또한 수사와 심문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로 진행해야지 고문이나 조작이나 짜맞추기 식으로 진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얼마전 30세 초반의 나이로 자살한 청년

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는 17년간을 억울한 감옥생활을 하고 나와서 그 억울함을 풀 수없게 되자 자살로써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유서를 남겼다. 그는 15세의 어린 시절에 배가 고파서 남의 집에 음식을 훔쳐먹으러 들어갔다고 보일러실에서 잠이 들었다고 한다. 그 집 식모가 보고 놀라 경찰에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강도살해용의자로 몰리고 말았다. 수없는 고문으로 그의 사건은 조작되었고 결국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받고 그것을 다 살고 나왔다. 그 철없는 어린이를 자신의 일신상의 편의를 위해서 강도살인자로 규정한 법집행기관 기성세대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직도 뻐젓하게 살고 있다. 혹 몇 사람들은 양심 때문에 마음속에 멍에로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잘 살아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제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 간편한 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앞으로 만들어질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한 역할을 틀림없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1997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1996년 9월 1일부터 1997년 8월 31일까지 수사기관의 폭행, 감금, 가혹행위 등으로 고소, 고발된 사건은 252건이었으나 그 중 기소된 것은 3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무혐의와 기소유예로 판결되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들 모두가 같은 통속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결국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모든 개혁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정부'의 업적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여기에 본 필자는 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의 대표적인 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산하기구인 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여기에서 밝히려고 한다. 1998년 5월에 있었던 NCCK 98년도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서는 "우리는 국가보안법과 보안 관찰법이 냉전이념에 기초하여 국

민의 정치적 자유와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악법임을 거듭 밝히면서 이의 폐지"를 주장했다. 나아가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조작되어 감옥에 갇혀 고통 당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각성된 의식으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 쓸 때가 되었다.

도청 감청에 대한 외국의 입법과 국제인권법

조시현 (성신여대 법학과,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실행위원)

미국 국무부가 발간하는 연례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110여개 국가는 헌법상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 90여개가 넘는 국가에서 광범위하고 불법적이며 통제되지 않은 도청 및 감청이 보고되었다. 국가정보기관, 경찰, 군수사기관이 공통적으로 노동조합, 인권단체, 기자, 정치적 반대자 등을 주요한 감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파라과이나 온두라스처럼 국영 정보 통신업체들이 적극 가담하고 있는 곳도 있다. 또한 1991년 멕시코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건물에서 도청장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버마와 인도네시아 역시 감시사회로 불려진다.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미국의 경우 FBI가 정치단체 등의 컴퓨터 망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프랑스 방첩대가 저명한 언론인과 야당지도자의 전화(그들이 잘 가는 술집과 식당 전화까지)를 도청하고 영국의 정보기관이 사회활동가, 노동조합, 시민단체를 사찰한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사생활침해의 현실 속에서 국제사회가 도청과 감청으로 인한 인권침해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발전시키고 있음 역시 주목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미국의 감청법제와 국제인권기준이 어떻게 감청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한국의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 감청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1. 미국

「범죄단속 및 거리안전 종합법」
(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 Act)

1968년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법원은 확고하게 도청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예컨대 독나무열매이론; *Nardone* v. *U.S.*, S.C.(1939)) 1934년의 통신법은 동의 없는 감청을 금지하였다(18 USC §2515도 참조). 1967년 연방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을 영장 없는 압수와 수색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 제4조에 바탕을 두었다. 이러한 배경아래 사설탐정과 정부기관에 의한 광범한 도청활동을 뿌리 뽑기 위해 「범죄단속 및 거리안전 종합법」이 제정되었다.

정의

감청(eavesdropping)은 전화 또는 전보통신을 엿듣거나 작은 송화기와 송신기를 도청장소에 몰래 두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며 이 법은 모든 사적 도청을 금지한다.(미국의 형사법 역시 전선, 구두 또는 전자통신의 감청을 일반적으로 금지한다(18 USC §2511)). 정부 역시 법원의 영장이 없이 도청할 수 없도록 한다. 감청장비의 제작, 판매, 광고 등도 금지된다(18 USC §2512).

영장주의를 채택하여 감청을 합법화하는 이 법은 법원의 영장발부에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법관은 검사의 신청(기재사항에 대하여 18 USC §2518)에 따라 (1) §2516에 열거된 범죄가 실행되고 있거나 실행완료 또는 착수되었다고 믿을 만한 개연적 이유(probable cause)가 있고; (2) 이 범죄에 관한 특정한 통신이 신청하는 감청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개연적 이유가 있고 (3) 정상적인 수사절차가 시

도되었지만 실패하였거나 또는 시도되어도 성공할 것 같지 않거나 너무 위험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며 (4)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선, 구두 또는 전자통신에 대한 감청이 이루어질 설비나 장소가 위의 범죄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되려고 하고 또는 그러한 사람에게 대여, 그 명의로 기록되거나 공동 사용된다고 믿을 만한 개연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수정하여 감청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같은 법, 5항).

- 감청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을 넘지 않아야 하나 갱신할 수 있다.
- 영장 없는 감청을 통하여 얻은 증거는 배제됨을 명시하고 있다.
- **감청된 각각의 당사자가 재판, 심리 또는 절차에 앞서 최소한 10일 전에 법원의 감청영장 사본과 첨부된 감청신청서를 제공받지 않으면 연방 또는 주법원에서의 어떠한 재판, 심리, 기타 다른 절차에서 감청된 내용과 이로부터 나온 증거를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고 공개되어서도 안된다고 규정한다(같은 법, 9항).**

이와 같이 미국법은 감청에 사전영장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등 긴급상황의 경우 예외를 두어 감청을 일단 허용하고 48시간 안에 영장을 얻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7항).

- **불법하게 이루어진 감청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시하여 통신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개인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18 U.S.C. §2520)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고 10,000달러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구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적용의 실제 1984-94년 사이 영장발부가 배로 증가하였고 94년에만 1000건이 넘는 영장이 발부되었다. 1970년에 평균감청기간은 20일이었으나 1994년에는 40일이었다. 평균 40일 동안 하나의 영장으로 2139개 회선과 84명이 감시되었는데 1994년에만 해도 어림잡아 2백십만개 회선과 8만4천명의 대화가 청취된 것이다. 보다 큰 문제는 전체 감청의

17%만이 실제 범죄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2. 감청과 국제인권기준

(1)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와 다른 국제인권협약들은 모두 누구나 자의적이거나 불법한 간섭이 없는 사생활을 보호받고 통신의 자유를 누린다고 규정한다.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다할 의무를 진다.

국제인권규약에 의해 설립된 인권이사회는 이러한 국제원칙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General Comment 16: Article 17 (1988)). 특히 법률에 의해 간섭이 이루어지는 경우(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의 경우)에도 그 법률은 규약의 목적과 취지 및 구체적인 규정과 부합하여야 하며 그러한 간섭은 구체적인 경우 합리적이어야만 한다. 즉 규약에 비추어 특정 감청법을 심사할 수 있고 감청법에 따른 감청행위는 합리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국제인권법상 불법이다.

이사회는 특히 규약 제17조의 이행을 위해서는 서신과 통신의 완전과 비밀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보장될 것을 요구한다. 전자 또는 기타의 방식에 의한 감시, 전화, 전신과 다른 통신 형식의 감청과 도청, 대화의 녹음은 금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인권이사회는 또한 감청 등에 관한 법규뿐만 아니라 감청집행을 하는 기구에 대한 정보와 그러한 간섭이 엄격하게 법에 따른 것인지 감시하는 기관과 권리가 침해된 개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기구를 통해 제소할 수 있는지와 구제수단 그리고 실제 관행이 법과 일치하는 정도에 관한 정보를 국가보고서에 담을 것을 요구한다(같은 곳).

이러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면서 인권이사회는 1995년에 러시아에 여전

히 전화도청을 위한 장치가 남아있음을 지적하면서 불법간섭에 대한 보장수단을 규정하는 명확한 법률을 만들 것을 러시아정부에 권고하였다(UN Doc. A/50/40 (1995), para. 380). 1997년 슬로바키아의 상황을 검토하면서 이사회는 감청은 '언제나 독립된 사법기관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U.N. Doc. A/52/40 (1997), para. 384).

(2) 유럽인권협약

유럽인권협약 제8조 1항은 "누구나 그의 사생활과 가족생활, 가정과 서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서신은 전신, 전화, 전자통신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된다(*Klass and others* v. *Germany*, Judgment of 6 Sept. 1978, Ser. A, No. 28).

협약 제8조 2항은 공권력에 의한 간섭의 경우 갖추어야할 요건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그 나라의 국가안보, 공공안전 또는 경제적 복지의 이익을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하며 무질서 또는 범죄의 저지,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권력은 이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예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경우에도 "그 국가의 관할권 안에 있는 사람을 무제한적으로 비밀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Klass사건).

감청을 허용하는 법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법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민주주의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할 수도 있는 위험을 인식하며 법원은 협약당사국이 간첩과 테러에 대한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하다고 여기는 아무 조치나 취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독일의 감시법이 문제된 Klass사건에서 유럽인권법원은 감시체계가 법률로 마련될 경우 남용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장조치"가 있어야 한**

다고 판시하였다.

더욱이 인권법원은 이 사건에서 비밀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체제를 허용하고 수립하는 법과 관행의 존재는 - 그 자체로서 피고에게 실제 취해진 조치를 제외하더라도 - 협약 제8조가 보장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방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유럽인권위원회는 또한 정보기관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밀감시를 허용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정보기관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합리적 가능성이 있으면 8조 위반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였다(Application No. 12015/86 (report of 6 July 1988)).

영국의 경우 유럽인권법원은 영국의 법제도를 검토하면서 "공권력에 주어진 재량행사의 범위와 방식이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그만큼 민주사회에서 법치주의 아래 시민이 누려야할 법적 보호의 최소한의 정도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였다(*Malone* v. *United Kingdom*, Judgment of 2 Aug. 1984, Ser. A, No. 82). **법원은 또한 감청을 허용하는 법률은 관련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accessible)이어야 하고 그 적용이 예측 가능하여야 하며 법치주의의 원칙과 부합하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고 법적 기준을 밝히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Kruslin사건에서 피고인은 프랑스법원에서 전화통화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국제법정인 유럽인권법원에서 사생활 보장권과 통신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여 그 권리를 인정받았다. 이 사건에서는 프랑스의 전화감청 허용규정이 문제되었는데 인권법원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협약의 요건과 관련하여 위의 Malone사건의 판시를 원용하면서 특히 명확한 법률이 요구된다고 하였

다: "무엇보다 사용 가능한 기술이 계속해서 더욱 정교하여짐에 따라 [감청] 문제에 관하여 명백하고 자세한 규칙을 두는 것은 필수적이다"

(*Kruslin* v. *France*, Judgment of 24 Apr. 1990, Ser. A, No. 176-A; *Huvig* v. *France*, Judgment of 24 Apr. 1990, Ser. A, No. 176-B(야채가게 주인이 탈세혐의로 전화감청을 당한 사건)). 더욱이 무조건 감청을 허용하는 법률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법률의 성질이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방해에 대한 **보호수단을 마련할 정도**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유럽법원은 프랑스법이 전화감청의 대상 또는 그러한 조치를 정당하게 하는 범죄의 성격과 같은 감청절차의 핵심적인 측면들을 적절하게 정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 전화감청기간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의무를 법관에게 지우지 않고 있음을 들어 협약 제8조 위반이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또한 감청기록과 관련한 정부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인권법원은 "감청된 대화를 담은 요약보고서의 작성절차, 감청기록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전부를 판사와 변호인에 의한 검증을 위해 전달하기 위해 취해져야 하는 주의사항과, 특히 피고인이 수사판사에 의해 무혐의로 처리되거나 법원에 의해 석방된 경우 기록을 지우거나 테이프를 파기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프랑스법에] 아무런 규정도 없다"고 하였다.

국제인권법에 비춰본 감청에 관한 국내법제의 문제점

통신비밀보호법은 제1조에서 감청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확립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시행령 제2조는 "통신제한조치"가 특히 필요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며,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 또는 대화의 녹음·청취를 하는 경우라도 이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이를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필요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법치주의 등 사생활과 통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에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의 원칙에 충실할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실체법규와 절차 및 실행을 보면 그렇지 않음은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명백하다.

첫째 감청이 허용되는 범죄의 범위를 제5조 1항과 같이 매우 포괄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실상 개인의 모든 생활영역이 감시의 대상이 됨으로써 사생활의 보호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는 대상범죄가 명확하여야 한다는 확립된 국제기준에 반한다.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는 경찰과 정보기관은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기소할 수 있게 되고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양심적인 언론인, 지식인 등의 활동에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다. 예컨대 평화적 시위를 계획한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의 전화」 등이 도청되어 익명성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걸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이러한 법률은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도매금으로 쓸어버리는 국가감시체계의 제도화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둘째 감청이 허가되는 상황을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행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채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제5조 1항)라고 하여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범죄의 폭이 넓고 '계획'의 경우까지 모든 대상범죄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남용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미국의 입법이 이보다 훨씬 제한적인 것은 시사적이다.

셋째 제6조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사항에 그치고 있고 법원이 감청을 거부하거나 감청조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법은 법원이 범죄발생의 즉각성, 범죄와 통신과의 관련성, 보충성, 범죄와 감청설비·장소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해본 다음 영장을 발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감청에 적절한 사법통제를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에 따라 영장발부 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감청에 대한 법체계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인 경우에도 남용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의심받는 우리나라 법원이 인권옹호의 전당으로서 거듭나기 위하여 감청남용의 그릇된 수사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제 구실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택수색의 경우와 무작위적이며 무제한적인 남용의 가능성이 큰 정보통신의 감청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주의를 도청과 감청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충실한 인권보장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여야 겠다.

넷째 최초 3개월이라는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그 자체로 너무 길 뿐 아니라 연장이 가능하여 사실상 무한정 감청이 가능하다.(제 6조

7항) 최근 유럽연합회원국 등 외국의 입법동향이 그 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극히 제한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다섯째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채집이 특히 필요한 때"(제7조) 특별절차를 마련하고 기간도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여 대폭 늘리고 있는데 이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남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입법이라는 비판을 할 수 있다.
여섯째 감청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사생활 침해의 여지와 통신의 비밀성은 최소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제한할 뿐 아니라 적절한 보장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인권법상 잘 발달되어 있다. 이 점에 비추어 통신제한 조치에 관한 집행대장(제9조)과 감청설비 인가대장(제10조)만 비치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러한 국제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일곱째 통신비밀보호법은 무엇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형사피고인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도청되고 감청이 허락된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감청으로 알게된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되거나 법원이 그 내용을 적법한 증거로서 받아들인다면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 보장된 피고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법정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대화가 감청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여지도 없게 만들 위험이 있다.

도청과 감청의 남용과 인권침해방지의 올바른 길

이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은 남용을 조장하는 법률이 될지언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 보장책이 될 수 없다.
적절한 통제가 없는 감청은 범죄와 맞선다는 정당한 사회적 필요를 넘어 사생활의 침해를 가져온다.
나아가 감청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모든 인권의 기초인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될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자체는 정상적인 인격 형성은 물론 다른 인간과 맺는 관계의 기반 자체를 허물어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삶 전체를 위협한다(세계인권선언 제22조, 제29조 참조).
이러한 점에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해 부득이 사생활이나 통신의 권리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이러한 자유와 인권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일 때에만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말아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지켜내기 위한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감청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통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감청청구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허가장발부처가 되어버린 오늘의 법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경찰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불법한 감시활동에 대한 보장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이외의 방식에 의한 감청에 대한 통제장치의 마련은 절실하다.** 이러한 점에서 국회에 의한 통제방식(제15조 참조)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감청하는 수사기관이 인권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할 **역감시(逆監視)의 권리**를 개인이 가지므로 시민사회는 개인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남용에 대한

역감시의 수단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아무리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감청을 허용하는 현행의 통신감시체제가 허구적인 것이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살시킬 수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적절한 통제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무늬만 '통신비밀보호법' 아닙니까?

93년 제정당시부터 사생활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전화도청 및 우편물 열람방식에 대해 안기부, 법무부와 체신부가 심한 마찰을 빚었던 통신비밀보호법은 94년 시행령에서 전화검열 및 감청을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때만 실시하도록 하되 내국인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의 허가를,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한 가능하도록 조정되었다.
그 밖에도 시행령에서는 법원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도청이라도 계속 집행할 필요성이 없으면 즉시 중단토록 하는 한편, 정보수사기관이 긴급상황에서 허가 없이 감청 또는 검열 등 통신제한조치를 취했으나 대통령 또는 법원의 사후승인 (48시간 이내)을 얻지못하면 이를 즉시 폐기 또는 악용을 방지한다고 되어있다. 또 전화로 협박, 폭언, 희롱을 받은 사람이 송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고 할 때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발신자 확인을 빙자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도청·검열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기한(1년)을 명시하도록 하고 도청에 의한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법원의 첫 감청영장은 94년 7월26일 발부되었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96년 9월 정기국회에서 국민회의 김영환의원이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으로부터 제출 받아 제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전화감청은 95년에만 1794건, 96년 2443건, 97년 상반기에만 2391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편검열은 95년 322건에 5만 8천6백여통, 96년 7만6천5백21건, 97년 6월말까지 3만3천9백67건에 달했다. 특히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95-6년에 걸쳐 58건으로 보고되었는데 97년에는 상반기에 이미 법원의 허가 없는 불법감청만 17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수사 정보기관의 요구에 따라 통신회사가 제공하는 가입자의 인적사항, 통화내용 등 각종 통신정보가 96년 한 해에만 16만2천8백14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돼 개인 통신정보의 유출도 심각한 상황으로 지적되었다.

제 1조 목적항목에서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탄생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정작 그 대상인 살인, 유괴, 마약 등 중요 범죄나 국가안보의 상황에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 돼온 것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와 무관한 보통의 시민들을 감시하고 엿보는데 일본에서 고가의 첨단장비를 들여오는 등 국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주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시행령의 목적과 법적용의 기본원칙을 참고로 보면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검사(군검찰관을 포함),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 포함)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녹음, 청취를 함에 있어서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대화의 녹음, 청취가 특히 필요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며,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 또는 대화의 녹음, 청취를 하는 경우라도 이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이를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전화감청의 대상은 법에서 공안사범만이 아니라 간통, 뇌물수수, 공갈사기 등 형법상의 단순 범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대상을 망라하고 있다. 편의주의적 사고의 발상이며 적용이 아닐 수 없다. 중요 범죄에 집중할 방침이라는 애초 당국의 약속에도 불구 위에 제시된 수치에서 보이듯 전화감청은 해마다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으로 해서 신빙성을 감하고 있으며 법원의 감청영장을 발부 받지 못한 상황에서 검사의 지휘하에 감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 법이 악용될 소지는 많다. 실제로 법시행 6개월만에 수사당국은 조기검거의 명분 아래 48시간내 사후영장을 받지 않고 법을 무시하는 현실을 볼때 법제정의 의미는 이미 희석된 것이며 늘어가는 감청, 우편검열로 98년 오늘 현 정권에서도 우리는 이전보다 인권신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자료출처 : 국내 각 일간지 93년 - 98년)

해외사례 미국「범죄단속 및 거리 안전 종합법」소개

The US Congress passed a federal statute ("Title III" of a comprehensive criminal law legislation called the 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 in 1968 which does six things:

미국 의회는 범죄 단속 및 거리 안전 종합 법이라는 총체적인 형법의 제 3장 (이하 제 3장)을 1968년에 연방법으로서 통과시켰다. 위 법안에는 다음의 6가지 조항이 있다.

1. Prohibits all private eavesdropping (eavesdropping means gathering information by wiretapping--intercepting telephone or telegraph communication--or bugging--placing a small microphone and transmitter in the place to be bugged).

모든 사적인 도청은 금한다 (도청이란 전화나 전신을 엿듣는 경우나 소형 마이크로폰이나 송신기를 도청하고 싶은 곳에 부착하여 엿들어 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뜻한다.)

2. Prohibits all governmental eavesdropping without a court order.

법원 명령 없는 정부의 모든 도청 행위를 금한다.

3. Provides a procedure for government to obtain court order (permission to eavesdrio).

정부에게 법원 명령 (도청 허가) 을 얻을 수 있는 절차를 부여한다.

4. Gives private right of action to those whose communications are illegally intercepted (meaning that victim of illegal eavesdropping can file a civil lawsuit in court).

통신의 내용이 불법적으로 새어나간 경우 피해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적 권리를 부여한다 (불법적인 도청에 의한 피해자는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

5. Restricts access to eavesdropping devices (prohibits manufacture, sale and advertisement of eavesdropping devices)

도청장치로의 접근을 제한한다 (도청장치의 제작, 판매, 광고를 금지한다).

6. Excludes all evidence gathered from eavesdropping without a court order.

법원 명령 없이 도청된 모든 증거 자료들은 법적 효력이 없다.

Under Title III, the government prosecutor can apply to a judge for an eavesdrop order. The judge can issue an order if he finds probable cause that 1) a crime is being committed, 2) that there is a good likelihood of intercepting relevant communications, and 3) that ordinary investigations will not catch evidence of the crime. If an eavesdrop order is issued, it must be limited in time.

제3장에 의하면, 검찰은 도청을 할 수 있도록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사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는데, 만일 판사가 다음 사항의 개연성 있는 이유를 발견할 때이다. 1)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경우, 2) 범죄와 관련된 통신을 도청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 3) 통상적인 수사에 의해서는 범죄의 증거를 잡기 어려울 경우이다. 도청 명령이 내려진 경우, 도청의 기간이 한정되어야만 한다.

Even before Title III, evidence gathered by eavesdropping was not admissible in court.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forbade any wiretapping without consent (now, under the 1968 Title III, law enforcement officers can eavesdrop if they obtain a court order). Even though the 1934 Act did not say wiretapped evidence could not be presented in court, this was established by the U. S. Supreme Court in 1937, in a case where court prohibited the prosecutor from introducing evidence from illegal tapping of the defendant's phone. In 1939, the Supreme Court extended the exclusion rule, holding that not only direct evidence from the contents of illegal tapping are barred, but also indirect evidence coming from another source that the government obtained as a result of the illegal tapping (this is called the "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

제 3장이 제정되어지기 전에 도청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1934년에 제정된 통신법은 승인 없이 이루어진 모든 도청을 금했다. (현재, 1968년에 제정되어진 제 3장에 의해서, 법 집행당국자들은 법원 명령을 받았을 때에만 도청이 가능하다.) 비록 1934년 법적 조항에서 도청에 의해 얻어진 증거는 법적 가치가 없다는 말이 언급되어지지 않았지만, 1937년 미 대법원이 검찰이 피고인의 전화를 불법으로 도청하여 얻어진 증거를 얻어내는 관례를 금지시킴으로써 위 전통이 세워졌다. 1939년에 대법원은 불법도청 내용으로부터 얻어진 직접적인 증거와 뿐만 아니라 정부가 불법적인 도청에 의한 자료로부터 얻어진 간접적인 증거조차 금지하여 위 배제의 규칙을 확대했다. (이를 "독초열매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Also, in 1967, the Supreme Court based the inadmissibility of eavesdrop evidence on the Constitution (4th Amendment--right to be free from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 without a warrant given by the court based on probable cause of criminal activity).

또한, 1967년, 대법원은 의회에서 도청을 통해 얻어진 증거는 허용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탕에 두었다 (4번째 개정안 - 범죄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가능성에 근거하여 얻어진 영장 없이 부당한 조사나 체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

Title III was passed in 1968 to strengthen the law prohibiting eavesdropping, because although illegal eavesdropping evidence was not admissible in court, both private detectives and government officers were engaging in widespread eavesdropping activity. Title III makes willful (not accidental) interception punishable by a maximum fine of $10,000, imprisonment for five years, or both. Title III was included in the Omnibus crime bill of 1968 because the subcommittee hearings on the bill showed not only that organized crime (bomjwe jojik) was a problem, but that government officials' use of illegal wiretaps was widespread. Some interceptions had accidently overheard well-known public figures, such as Muhammud Ali (famous boxer). The Johnson Administration, embarrassed by this revelation, banned all eavesdropping execpt in national security cases.

제 3장은 1968년에 도청을 금지하는 법을 강화시키기 위해 통과되었다. 왜냐하면 비록 불법 도청 증거 자료가 법적인 효력는 없었지만, 사립탐정들과 정부 요원들 모두 도청 활동에 널리 관련되어 있었다. 제 3장에 의하면 고의적인 (우연이 아닌) 도청은 최고 만 불의 벌금이나 5년간의 구금, 또는 양쪽 모두에 따라 처벌한다. 제 3장은 1968년 종합형법에 포함되었다. 왜냐하면 그 법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청문회 과정에서 조직 범죄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부관리의 불법적인 도청도 횡행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잘 알려진 공인, 예를 들면 무하마드 알리 (유명 권투 선수) 를 우연하게 도청하게 된 사례도 있는데, 이 사실의 누설로 당황한 존슨 행정부는 국가 보안 경우를 제외한 모든 도청을 금지시켰다.

That's the summary of the U. S. law. U. S. does allow prosecutors to apply for court orders to eavesdrop, if the three conditions listed above are met. Also, there is a provision in Title III that allows government, in "an emergency situation"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to obtain the eavesdrop order after the eavesdropping is done (but application must be filed within 48 hours).

위의 사항이 도청에 관한 미국 법의 요약이다. 미국에서는 위에 기록된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검찰이 도청을 위한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제 3장에는 정부가 국가 보안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인 경우, 도청을 한 후에 법원 명령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명령 신청은 48시간 안에 접수되어야 한다).

도청을 중단하라!

전화감청 문제에 있어 인권 운동 단체를 위한 시론

David Banisar
워싱턴 사무소, Privacy International

들어가기

통신 서비스의 폭발적 팽창을 통해 인권 단체는 전세계로 정보를 퍼뜨리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새로운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통신은 인권단체의 조직사업을 향상시킬 기회를 만들어 내었고, 이제까지보다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인권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인권 옹호 활동을 감시하고자 하는 정부나 다른 조직들은 이들 신 기술을 감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권 옹호자들은 이러한 위험과 수단들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이 자료는 흔히 도청이라고 간주되는 대화 또는 전자통신에 대한 가로채기와 전화통신에 관련된 다른 쟁점들에 국한될 것이다. 그리고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인권 단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도청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자주 남용되고 있다. 미국무성은 1994년도판 연감 '인권 실태에 대한 국가 보고서'에서 70개가

넘는 국가들에서 정부와 민간 단체들에 의해 불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도청장치의 사용(use of wiretaps)이 널리 퍼져 있다고 보고했다. 인권 단체들과 기자들, 정치적 반대파들이 정부 정보 부서와 법 집행 기관 그리고 기타 비정부단체들에 의해 주요 감시 대상이 된다. 온두라스와 파라과이와 같은 여러 국가들에서 국영 통신회사들이 인권 운동가들을 감시하는 보안국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감시가 이루어진다. 가령 1991년에 멕시코 인권 기구 사무실에서 도청장치들이 발견되었다. 최근 언론에서는 멕시코에 현재 200,000개 정도의 불법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개도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정보자유법 아래서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컴퓨터 전문가' 모임이 제기한 소송에서 FBI가 정치 및 인권 단체들에 의해 사용되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감시했다고 폭로했다. 1980년대 중반 수년간 프랑스의 정보국 요원들은 유명 언론인과 야당 지도자들의 전화를 도청했다. 영국에서도, 영국 정보국이 사회주의 운동가들, 노동조합, 시민 운동 단체를 감시했다고 폭로한 사건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러므로, 인권 단체들이 도청에 대해 관심 가져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다. 정부는 늘 인권단체를 감시하여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들의 정보원은 어디인지, 그들이 계획하는 활동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고 한다. 통신수단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인권운동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위협에 까지 노출되고 있다.

누가 할 수 있나 그리고 얼마나 할 수 있나?

대부분의 전자통신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나 고가의 장비 없이도 도청이 가능하다. 도청장치는 만들기 어렵지 않고 많은 전자상가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다수의 제조업자들은 도청장치들을 아무 구매자들에게나 제한 없이 팔고 있다. 그러므로 인권 단체들은 정부나 민간단체들이 엿듣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가 그들이 감시 대상이라고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정부 혹은 단체에서 모든 전화기를 도청하고 동시에 모든 대화를 듣는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도청은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며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도청하고, 대화를 녹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 대화를 엿들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장비사용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감시에는 실질적인 제한이 따른다. 구 동독의 비밀경찰은 10,000명의 사람을 고용해서 도청했다.

감시를 자동화하는 컴퓨터 음성인식과 같은 기술은 서구(혹은 여타) 정부에 의해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오타와 시민'은 캐나다 통신 보안청이 매일 감시하는 수백만의 신호들에서 중요한 어휘나 구문을 분리해내는 기술 개발을 위해 그리고 '통화자 신원 확인 시스템'의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11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콜롬비아 정부가 휴대전화에 대한 음성인식기술을 사용하여 마약 카르텔 두목들을 잡아낼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돕는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러한 신 기술은 아직까지 부유한 나라가 아니면 그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경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막대한 도청을 하는데 에는 기술적인 제한도 따른다. 최근에 구 소련의 KGB는 그들이 모스크바에 있는

전화를 겨우 천 회선정도 밖에, 나머지 러시아 전체에 대해서는 천 오백 회선 정도밖에 도청할 능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 도시의 모든 전화가 감청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인권단체 사무실과 실무자의 집 근처의 공중전화 및 가정용 전화까지 감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에서 정보국 직원들은 불법적으로 몇몇 언론인들의 전화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주 가는 술집이나 식당에 있는 전화까지 도청했다. 감시는 일반적으로 정보국원들에 의해 수동으로 설치되어 도청되는 도청장치들에 국한되게 마련이지만 이는 무시할 수 있는 위협이 아니다.

일반 전화에 대한 도청

일반 전화 시스템은 도청에 매우 취약하다. 음성통신을 낚아채는데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치 않다. 도청장치가 놓일 수 있는 곳도 많다. 가령, 구형 전화기의 수화기에 많이 설치된 녹음기는 원거리 수신자에게 통화 내용을 전송할 수 있다. 도청장치는 또한 건물의 지하에 있는 전화박스에 설치될 수도 있으며, 주택 밖의 전화선이나, 감시 대상 부근의 전신주 연결박스에 설치될 수도 있다. 경찰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원거리에서 통화를 감청 하는 방법으로는, 전화국 본사에 회선을 끌어다 쓴다.

도청 기술 중 다수, 특히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는 신 시스템의 경우는 도청을 당하는 사람이 도청사실을 알기 힘들다. 미국에서는 더 쉽게 도청할 수 있도록 모든 통신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입법안이 법집행부서와 정보부처의 요구로 통과되어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는 세

계적 규모로 막대한 효력을 갖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미국이 전화, 전환 설비의 최대 공급자이자 수요자이기 때문이다.

음성 통신 변조하기

전화통화가 쉽게 도청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은 가능하다. 수학적 기술을 사용하여 cryptography라고 부르는 통화를 변조하는 보안 전화기들은 상업적으로 모토로라, TRW, AT&T를 포함한 많은 회사들이 시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장치들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AT&T는 최근에 수화기 코드에 연결되어 있는 전화기 부착기를 선보였는데 이것은 수신 장치에서 연결되어 복제 장치처럼 대화를 변조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클리퍼 칩 이라는 특별한 컴퓨터 칩을 사용하는데, 변조된 통화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열쇠 역시 미국정부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 시스템을 '열쇠예치(key escrow)'라고 부른다.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들도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만일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나라의 사용자들의 열쇠를 (미국에서처럼) 정부도 가지게 될 것이다.

다른 장치들은 미국 데이터 접근방지 기준(Data Encrytion Standard:DES) 또는 은밀한 회사 기준을 사용한다. 대부분 보안 전문가들은 DES를 재정상태가 매우 좋은 거대 정보조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도청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비밀 기준은 공개된 알고리즘의 연구도 없으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들 장치는 매우 비싸서 개당 약 2천 달러(US$)이다.
또한 이런 장치들이 의도적으로 위험하게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

국과 몇몇 나라에서는 암호화기능을 가진 장치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수출하는데 정부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법이 있다. 도청기기를 수출하는 미국의 제조업자들은 국가보안국(National Security Agency)의 감시활동이 가능하게 상품을 고안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러므로, 해외의 미국기업들이 판매한 어떠한 장치도 민감한 정보에 대해 완벽한 보호기능이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

암호화에 대한 수출통제법이 없는 스위스나 스웨덴에서 디자인된 기기를 구입함으로써 이러한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기들 역시 그 국가의 정보국과 어떠한 약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근래 들어, Crypto AG라는 보안 전화와 팩스기기를 파는 회사가 실제로는 독일 정보국에 의해 통제 받는다는 사실과 고의적으로 암호화장치의 기능을 약화시킨 후 판매해왔다는 사실이 유럽 전역에 퍼졌다. 또한 정보부서들 간에 암호화의 약화를 초래하는 4자협정과 같은 국제 정보 공유협정도 있다.

최근의 발전중의 하나가 모뎀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PC 소유자 쌍방간에 대화하고 그들의 대화를 변조하게 하는 변조기술에 바탕을 둔 컴퓨터의 발전이다. 몇몇 무료 프로그램들이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무료이고, 인권단체가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그것들이 쓸만한 속도를 갖기 위해서 성능 좋은 컴퓨터(최소한 386 이상)와 고속 모뎀(14.4K 이상)이 필요하다.

무선 통신

무선 전화는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되는 추세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사

천만명 이상이 무선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수 백만의 휴대전화기가 사용되고 있다. 이들 모두는 쉽게 도청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이용에 주의해야한다.

최근 몇몇 전화기 제조업자들은 전화통화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사생활 보호' 무선 전화기를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감청을 제한적으로 막는 '주파수 뒤집기'라는 50년 묵은 간단한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휴대전화 역시 무선 전화기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쉽게 스캐너가 이 대화를 도청할 수 있다. 미국 법은 새로운 스캐너가 특정 주파수에 대해 도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장치들은 전자상가나 우편 주문 회사들에 의해 팔리고 있으므로, 이 역시 추적·감시당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시스템에 의한 새로운 휴대전화기의 경우 아직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및 여타 나라들의 정보 부서에서 기능 향상된 변조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파키스탄에서는 정부가 휴대전화기 회사가 감청하기 쉽도록 설비를 제공할 때까지 공장을 폐쇄 시켰다. 미국의 경우 휴대 전화기 사업자협회는 국가안보부(NSA)의 압력에 못 이겨 약화된 변조기준에 따를 것을 합의하였다. 전문가들은 그 기준이 감청에 대해 거의 아무런 보호도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정보부는 디지털 휴대전화기의 국제 기준인 GSM의 보안기능을 제한하도록 로비를 벌여왔다. 호주에서, 연방정부는 법 집행부서의 요구를 거절했고, 공중파 통화를 도청할 능력이 없이 작동하게 되는 새로운 디지털 휴대폰 시스템의 영업을 명령했다.

휴대전화기는 때로 시스템에 따라서 가까운 거리 내에서 피감시자의 위치를 알리는 데 역이용되기도 한다. 휴대기의 전원이 기지 국에 사용자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알려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유사한 기술로서 무선 호출기 역시 쉽게 감청 된다. 호출기는 변조 없이 신호를 받는다. 호출되는 모든 메시지를 자동적으로 잡아 감시할 수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컴퓨터에 이용 가능하다.

팩시밀리

팩스 전송의 감청 또한 가능하다. 팩스는 파일의 송수신을 위한 잘 알려진 규격을 사용하는 저렴한 전산 시스템이다. 디지털 오디오 테잎(DAT)의 흔한 사용으로, 팩스전송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것은 별다른 수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점점 쉬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팩스기계는 전화만큼이나 안전하지 못하다고 봐야 한다.

감청 방지 변조기능을 제공하는 팩스도 있다. 이러한 팩스는 미화 3,000 달러 정도 되는데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보안 전화와 같이 팩스기계도 미국에서 수출되기 위해서는 암호화장치를 약화시켜야 한다. 스웨덴이나 스위스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의 회사들은 그들 국가에 수출법이 없으므로 그들의 기계가 그러한 제한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제품을 보안 목적으로 구입하기 전에 암호화 전문가들을 찾아가 자문을 구해야한다.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 수가 있다. 싱가폴이나 중국에서는 정부에 암호화를 푸는 열쇠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암호화 장치의 사

용이 제한된다. 중국에서는 면허 없는 팩스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전화 거래 정보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부분이 전화를 통한 거래 정보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전화가 걸렸을 때, 상당수 전화 수신자 쪽이 전화회사의 컴퓨터에 기록된다. 이것은 비밀 정보제공자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이러한 기록들은 법집행당국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는데 정보의 유출을 파악하고 환경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감시한다. 구 소련에 활동하던 인권운동가 아나돌레 샤란스키의 보고에 의하면 소련 당국은 그와 이야기한 사람들에 대한 추적을 위해 정기적으로 그의 해외 송금을 감시했다고 한다.

컴퓨터 통신

빠르고 저렴한 컴퓨터 통신은 인권운동가에게 최근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별다른 보안 수단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컴퓨터 통신의 감청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속모뎀 통신(14.4k, 28.8k)은 기술적으로 아직 어렵지만 저속모뎀은 아주 쉽게 도청된다.

컴퓨터 통신도 암호화 할 수 있다. 다수의 인권단체들은 이미 그들의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있다. 중미의 단체들, 에티오피아와 미얀마의 단체들은 그들의 통신내용과 파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를 건다.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전자우편 암호를 건 네트웍을 개발하고 사용하여 수년 동안 남아프리카의 정보당국에 의해 전자우편이 해석되지 않았다고 한다. 암호화는 메시지를 보호하고 보내는 측의 신분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다른 통신 기술들과는 달라서, 컴퓨터 암호화는 거의 비용 없

이 사용 가능하다. 사용하기도 쉽다. 수출허가를 위해서 이러한 암호기능도 약화되겠지만, LOTUS NOTES 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컴퓨터 OS의 미래 버전과 같은 많은 상업 소프트웨어가 암호화를 구축할 것이다.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인권운동가인 Phil Zimmermann가 만든 '꽤 좋은 개인정보(PRETTY GOOD PRIVACY;PGP)'는 세계 인권단체에서 흔하게 사용된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컴퓨터에 호환되고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에서 쉽게 작동할 수 있다.

PGP는 '공개열쇠(public key)'암호화를 사용한다. PGP의 개개 사용자는 두 개의 열쇠-공개열쇠와 비밀열쇠-를 만든다. 사용자가 공개열쇠를 연락하려는 사람에게 주거나 심지어 전화번호같이 공개적으로 그것을 알린다. 비밀열쇠는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되며 비밀번호가 걸려있다. 공개열쇠를 사용하여 비밀열쇠의 소유자에게 보낼 메시지를 암호로 만든다. 오로지 비밀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그 메시지의 암호를 풀어 읽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공개열쇠 암호문은 친히 만나서 암호해독책을 나를 필요가 없으며 안전하게 열쇠와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다.

PG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서작성기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쓰고 PGP를 실행하여 수신인의 열쇠로 메시지를 변조하고, 변조된 파일을 우편으로 보낸다. 수신인은 PGP를 실행시켜서 파일을 읽을 수 있도록 바꾼다. 이러한 과정은 메시지의 길이에 따라 약 1, 2분 정도 걸릴 뿐이다.

PGP와 다른 공개열쇠 시스템의 다른 기능은 디지털 서명으로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편지의 바닥에 쓴 보

통의 서명과 같은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서명은 전자우편을 교환할 때 다른 사람에 의해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PGP는 컴퓨터의 파일을 보호하는 데도 사용된다. 그것은 전자적으로 저장된 문서와 통신으로의 접근을 막는다. 중미의 많은 단체들은 이것을 사용하여 인권 침해 상황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한다.

또 하나의 유용한 프로그램은 IBM PC 컴퓨터가 비밀번호 없이는 접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인데 Peter Cutman이 제작한 Secure File System 이다. SFS는 디스크 드라이브와 OS사이에 놓여, 모든 데이터를 중간에서 암호화한다. 꺼내서 쓰고 저장할 때 자동으로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열 때 비밀번호를 넣으면 암호를 자동으로 풀어서 화면에 보여준다.

결 론

신 기술은 인권단체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술은 인권단체를 감시하는 집단에게도 도청의 기술을 제공한다.

인권단체에 대한 도청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술상으로나 노동과 관련되어 한계는 있다. 감시기관이 시내의 모든 전화기를 동시에 도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인권단체는 사전예방을 원할 것이다. 몇 가지 도청을 막을 방법이 있다. 보안을 위해 구입한 기기들이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수행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한국: 민주인사와 노동조합 간부를 탄압하고 있는 국가 보안법

발신 : 엠네스티 인터네셔널 (국제사면위원회)
수신 : 한국 김대중 대통령 앞
날짜: 1998년 7월23일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20명의 노동단체 지도자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민주주의 운동가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그 동안의 대통령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고수해야 한다.
이들 20명이 친북단체를 결성하고 노동계의 불안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현재 탄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의 구실은 대대적인 파업을 단속하겠다는 협박들과 우연히 일치한다.
노동조합의 요구를 친북 단체로 연결시키려는 정부의 탄압은 우려할 만한 사태이고 이에 대하여 엠네스티 인터내셔날은 이러한 구태의연한 과거의 탄압방식으로부터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을 요구한다.
과거에 우리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국내상황이 불안정할 경우에 국내의 민주주의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저지하는 데에 사용된 많은 사건들을 보도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악습이 인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서약서가 국제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새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주, 국제사면위원회는 불법적인 파업행위에 대한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의 사무국장을 포함한 5명의 주요 노동지도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많은 노동계 지도자들이 수배조치로 숨어 다녀야만 한다는 소식도 들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위의 사태로 현 정치를 몰아갈 경우 한국에서 보다 큰 사회적 불안정이 발생할 것이고 또한 서투른 국가의 대응책들이 불법적인 파업 행동과 시위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것은 또한 국가보안법이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더 이상은 정치적인 논쟁을 조성해서는 안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비폭력적인 정치적 노동운동을 하다가 구금된 운동가들과 노동계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한다. 또한 노동계 인사들과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인권적 차원에서 존중해야 할 것임을 한국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김대통령이 98년 2월에 취임한 이래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고 조직을 결성할 권리를 무시당한 채 북한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하에서 체포되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의 관료들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치적인 이념에 위배되는 사람들을 탄압, 저지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법을 이용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경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서 희생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적 위기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
또한 감금·구속이나 여타의 다른 제약들에 따른 두려움 없이 평화적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

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 주 한국으로부터 노동계 지도자와 학생들 그리고 운동가들을 포함해서 20명의 사람들이 국가 보안법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이 사태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친북 단체를 결성하고 현재의 노동계의 불안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포행위가 5명의 민주노총의 노동계 지도자들이 불법으로 대대적인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숨어 다녀야만 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노동조합간의 마찰이 조성될 때에 발발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노동계의 불안정을 친북활동과 관련지으려는 구태의연한 시도와 과거의 방식에 다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정부측의 태도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 세력을 견제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사면위원회는 국가 보안법이 국내 상황이 불안정할 때에 국내 민주화인사들을 탄압·견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과거의 많은 사건들을 상세히 보도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습이 인권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한국 정부 하에서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포된 20명의 사람들은 1989년에 조직된 반제청년동맹이라는 확실하지 않은 단체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체포 경고장도 없이 울산, 부산 그리고 서울에 있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안기부가 이 사건을 조사했을지도 모른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노동계, 여성단체, 그리고 젊은 민주주의 단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도에 따른 그들의 명단입니다.

Ulsan

방석수	KCTU Ulsan Regional Council, Education-Publicity
김명호	KMWF Ulsan Regional Office, Policy Director
이 희	KMWF Ulsan Regional Office, Publicity Director
정대연	NADRK Ulsan Alliance Youth Group
이철현	NADRK Ulsan Alliance Youth Group
홍정련	Hyundai Heavy Industries Workers Families Association
이은미	Open Women's Association
이창규	Advance 2001 (young workers association)
임동식	Advance 2001 General Secretary
이정희	Advance 2001 Chairperson
황성순	student
장현수	student
진원철	student
임규섭	graduate of Ulsan University
김이경	wife of Park Kyung-son
박경순	Owner of a book store
김창현	East county Chief in Ulsan

Pusan

이의엽	Pusan Workers Association, Education Officer
김성란	Pusan Workers Association, Former General Secretary
김용규	Pusan Workers Association, member

국제사면위원회는 비폭력적인 정치적 노동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연행된 20명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노동계 인사들의 권리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리 또한 존중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한국의 현 사회적 불안과 그로 말미암은 체포 사건들은 평소 인권의 보호가 위기 상황하에서는 더없이 중요함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기본적인 권리가 경제 개혁의 미명하에서 희생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자유로이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고 합법적인 파업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체포나 다른 제약에 대한 불안 없이 평화적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발신 : 빌리 하에크
독일노동조합총연맹 베를린 지부 간부
수신: President Kim Dae-Jung

Berlin, 98-07-29

존경하는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께

한국의 울산에서 노동조합, 여성운동가, 청년운동가 그리고 정치활동을 하는 시민운동가들이 구속되어 탄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속자들이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사람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국의 정치적 탄압상황을 위하여 독일노동조합연맹, 지식인, 시민들과 함께 현명하게 연대를 위한 행동을 취하고자 합니다. 만약 김대중정부가 계속 이러한 정치탄압을 계속할 경우, 독일은 한국 현대자동차 불매운동까지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울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불매캠패인을 고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행동에 항의하는 독일의 행동결정이 시작된다면 (울산현대자동차 독일전 지역에서의 보이코트) 이러한 사태가 결코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언론에 인지된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의 당신의 이미지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울산에서 연행한 모든 구속자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빌리 하예크

수신 : 참여연대국제인권센터
발신 : 미국 US.GLEP 미국주재 한국대사관에 보낸 서신.
By Hannah Frisch
날짜 : 9월 5일

박근우 대사님께

U.S/Guatemala Labor Education Project (미국 과테말라 노동교육센터) 는 과테말라를 비롯한 전세계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특히 우리 단체에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울산에서 20명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국보법에 근거하여 구속되었으며, 북한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몇 경우에는 지도자들의 전 가족이 모두 구속되기까지 했다는 사실도 접했습니다. 게다가 조사하는 기간동안 심하게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에게 의료행위가 금지되었다는 내용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사님께서 이 지도자들의 인권에 가해진 심각한 침해사태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을 긴급하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즉시 그들이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국제법으로 인정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어떠한 활동에도 위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

문입니다.

좀더 오래된 문제로는, 현대가 각 공장에서 대량해고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회사측이 노조와의 대화와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이러한 해고를 시행하고 있음을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왔습니다. 또한 해고에 따르는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비하여 그것을 다루기 위한 자세한 계획이 담긴 사칙의 기록을 노동자들이 발견했으며, 그 기록에는 경찰과 노조원들의 구속을 담당할 "지원팀"과의 사전 계획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현대그룹과 현대그룹노조간의 진정한 협상을 장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만약 그들간의 의견 불일치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한국정부는 중립적 태도를 취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한 정부의 입장이 한국 노동법에 근거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좀더 한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사항들과 재협상을 해야한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대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지도자들이 구속된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해고와 관련된 문제들이 현대 노동자들의 주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Sincerely,
Hannah Frisch (U. S/GLEP)

부산, 울산지역 조직사건 '영남위원회'의 재판을 앞두고

무차별적인 도청·감청을 포함한 수사당국의 비인간적 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7월 22일 전격 구속된 울산·부산 지역의 노동운동가, 활동가들이 '영남위원회'라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오는 10월 13일 처음 법정에 서게 됩니다.
누차에 걸쳐 바뀌어진 조직의 이름-조선노동당 영남지역당, 조선노동당 남부지역당, 반제청년동맹, 한민전 영남위원회, 영남위원회라고 호칭이 보여주듯 스무 명에 달하는 이들 청년활동가들이 진보와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울산 현대자동차의 대단위 정리해고를 철회하도록 백방으로 애쓰던 사람들로 수사당국에 의해 하나의 조직으로 억지로 묶여진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라고 자처하는 현 정권은 정리해고 철회와 민중의 생활권 보장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공인된 사회단체의 구성원들인 이들을 친북의 지하전위조직인양 발표했습니다.

1. 인간의 뇌를 감시하는 수사당국- 도청 3년

그 근거로 제시한 천 여개에 달하는 녹음·녹화 테이프는 경찰이 길게는 3년에 걸쳐 주시하는 인물에 대해 행한 도·감청, 나아가서는 몰래카메라의 증거였습니다.

국제연합(UN)에서는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1948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천명한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제정된 우리 나

헌법에도 역시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인간의 기본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채 무려 3년을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당했다는 사실은 인권·사생활의 침해이며 심각한 인간 존엄성 파괴 행위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비인도적 자료를 근거로 수사당국은 10년전 함께 활동하던 지역의 사회단체 인사들과 무관한 사람들을 한데 묶어 반국가단체 성원으로 둔갑시켰습니다.

2.수사과정의 인권문제- 피검자들에게 건강권을 보장하라.

수사당국은 구속후 수사과정에서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해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다시 악명 높은 밀실수사의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잠 안재우기, 벌 세우기 등등의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을 강요한 바 이를 거부하는 구속자들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중환자이거나 통원치료를 받던 사람들이거나를 불문하고 일체의 의료혜택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인권행사를 준비하고 국가적인 인권기구의 발족을 서두르는 현 당국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구속이 전부터 한방치료를 받는 중환자의 경우 줄기찬 요구와 투쟁으로 한 사람에 한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통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물리치료로 대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미결수의 경우는 범법자가 아닌 '보통사람'으로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설사 범죄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청·몰래카메라로 얻어진 수사당국의 자료는 애초 무리한 방법으로 획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진위를 불문하고 재판에 증거로 채택되어 판

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국내외적으로 도·감청은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없는 것이 보편적 원칙입니다.
무리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증거해 내려 한다면 경·검찰은 인권유린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되는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즉각 국내외에 현정권 인권의 후진성과 비민주성으로 폭로될 것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바라보는 현재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는 수사당국과 우리의 인권현실을 개탄하며 위 두 사실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불법적 방법으로 취득된 자료는 법정증거자료로 채택되어서는 안됩니다.

-법무부는 재소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진료를 받을 권리를 허가해야 합니다.

1998.9.26

영남위원회 구속자의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 단체 대책모임

부산/ 울산 지역 조직사건 '영남위원회'의 재판을 앞두고
-불법도청과 감청에 의한 인권피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 -

민주사회인가, 감시사회인가

민주주의란 시민들 개개인이 조직화된 권력으로부터의 감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인류가 지금까지 발명한 정치제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도라고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야말로 개인의 존엄과 주체성, 인권을 가장 잘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도 암울했던 군부독재의 시기를 거쳐 이제는 착실하게 민주주의를 성취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민주화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국민인권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 것도 이러한 인권중시의 도도한 시대적 조류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강조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반인권적 관행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최근에 민선 울산 동구청장과 부산 및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던 민주인사들이 대거 연루되었다고 하는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 문제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개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도청, 감청, 비디오녹화를 3년씩 자행했다는 점이다.(울산시민대책위원회 자료에 근거)

이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있어서는 안되는, 시민권과 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인다. 더욱이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이러한 도청, 감청, 또는 비디오 녹화자료를 범죄의 증거로서 제출한다면 이는 인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될 것이다. 과연 언제까지 이러한 구시대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관행을 지속시킬 건가? 이러한 일상적 감시가 수사의 관행이 된다면, 국가보안법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든 민주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일상적으로 초법적인 감시망 하에 놓이게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는 우리 사회 민주화의 근간이 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자율권과 소속 회원들의 인권에 대한 탄압이자,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엄청난 범죄적 행위이다.

실제로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지난해 수사기관의 통신감청이 96년도에 비해 거의 3배 이상 늘었으며 특히 "감청을 하다 법원의 영장을 받지 못한 경우가 96년의 51건에서 지난해에는 393건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며 "수사권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도 있다(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에 근거)

우리는 현재 인권중시의 민주사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인권유린의 감시사회로 남아있을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민주사회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고질적인 수사관행으로 되어 왔던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도청과 감청, 비디오녹화 따위는 사라져야 한다.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설혹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도청, 감청, 비디오녹화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자료들은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어서는 안된다. 지구상의 어떠한 선진국가에서도 이러한 자료들이 재판과정에서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는 채택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 · 사회 단체 대책모임

도청 · 감청, 전자 통신 검열에 반대하는 해외 민간단체 주소

◙ PRIVACY INTERNATIONAL

Privacy International 은 1990년에 세워진 세계적으로 40여 개국에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인권단체로 정부와 기업의 감독을 감시하고 있다. PI는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워싱턴 D.C.에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PI는 전화도청, 신분증 체계, 감시 비디오, 데이타 유출, 경찰 정보 체계, 의료 기록 등의 정보기술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유럽, 아시아 그리고 북미에서 벌이고 있다.

http://www.privacy.org/pi

◙ Owner-Censor
(일본에서 도청법 제정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

Owner-Censor@jca.or.jp

증 재 합 의 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98서울중재210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반론보도문
   가. 제 목 : 반론문
   　　金昌鉉 울산 동구청장은 金正日을 추종한 사실 없다.
   나. 본 문 :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에 관련한 월간조선 9월호 기사는 경찰수사기록을 옮겨 보도한 것일 뿐이다.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은 울산지역 노동현안문제의 민주적 해결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왔을 뿐이며 달리 이른바 영남위원회의 지역사업책도 아니고, 한민전이나 북한의 직접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한 사실도 없으며,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하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반제노동자회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2.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조선 1998년 11월호 161쪽의 하단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부분은 28급 고딕체 활자로 한다.(월간조선 9월호 154쪽 광고 기사중의 "최고의 권위! 최고의 전통!… 부분과 같도록 한다.) 본문 부분은 1998년 9월호에 사용한 본문부분 활자와 같게 한다.

1998. 10. 7.

중재서기 김 주 용 _____

신 청 인 대리인 박 형 상 _____

피신청인 대리인 조 갑 제 _____